

- 강남구 일원동 663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변경)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입안요청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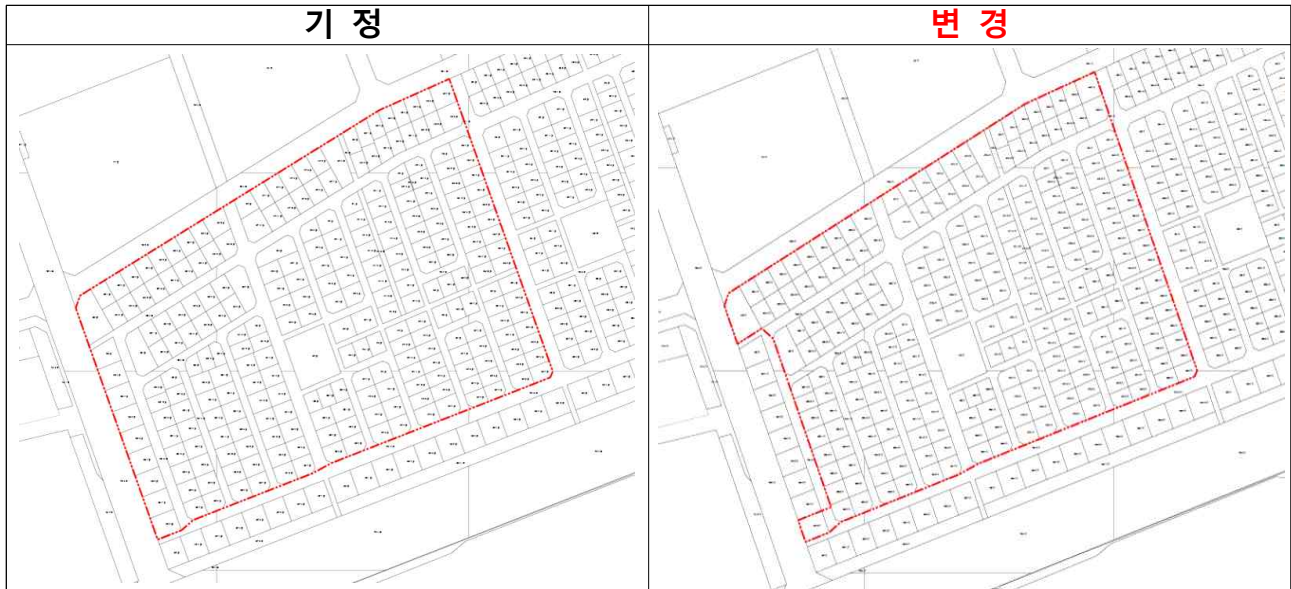
이에, 강남구 일원동 66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였으나, 구역계가 변경되어 재차 공개합니다,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붙임1~4) 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동의철회서, 반대동의 철회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 전(주민→區)을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 전(區→市)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안요청동의서 제출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도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정비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 전(區→市)까지 정비구역 지정 반대동의서(2030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을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 역 계 : 강남구 일원동 663번지 일대(면적 약69,490.7m²)

※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2.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

- 성 명 : 김대원
- 연락처 : 010-6483-4166
- 사무실 :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41길 13, 1층

3. 동의양식(찬성·반대) 번호 및 부여일자

- 우리 구에서는 동의양식번호를 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합니다.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임을 참고하셔서 동의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일원동 663번지 일대 제 1 호
번호부여일자	2025. 10. 31.
확인(인)	1~1000 (재건축사업과 직인)

4. 공개 장소

- 강남구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건축/도시 > 재건축 > 게시판
(※ 추가 우편안내 실시 예정)
- 일원1동 주민센터 게시판

5.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붙임1 후보지 신청 동의서는 신청인에게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직인 후 제공하였으며, 동의서 혼동을 방지하고자 공개하오니 참고하시 바라며
- 붙임2 반대동의서는 해당 서식으로 작성된 동의서만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직인여부 필)
-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며, 같은 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 등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로 처리 가능)
- * [영제33조제1항]1필지 또는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소유자 3/4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후보지 신청(區→市)시 사용된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재신청시 새롭게 징구하여야 합니다.

○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신속통합기획 통보 후 1년 이내 정비계획 결정신청이 안될 경우 및 선(先)심의제 적용시 정비계획 결정신청 이후 1년 이내 고시 요청이 안될 경우에도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정권자 또는 선정위에서 구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각1년 1회 연장 가능)

○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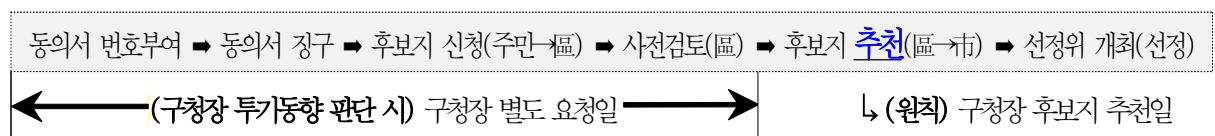
*[입안재검토] 토지등소유자의 20%이상 반대시

[입안 취소]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 1/2이상 반대시

○ 해당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 사전검토 과정에서 노후도 등 구역지정 기본 요건 미충족 시 후보지 추천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동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 발표일 기준 추진

▸ 단, 투기동향 등 구청장 요청시 미선정, 보류구역도 지정가능

(건축허가제한구역) 후보지 발표일 기준 추진(미선정,보류 포함)

<투기방지대책>

구 분		권리안정기준일 지정 (지분포개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등 방지)	건축허가 제한 (분양권없는 건축행위, 지분포개기 방지)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 (입안요청)	선정구역	추천일 or 별도 요청일	후보지 발표일 기준	후보지 발표일 기준
	미선정구역	-	-	후보지 발표일 기준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모집 안내문 및 서식 다운로드》 (검색어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모집 안내문)

-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seoul.go.kr>) > 정보센터 > 자료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문의 및 상담》

- 일원동 663번지 관련 문의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02-3423-6076)
 -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 ☎010-6483-4166)

- 붙임 1.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추진주체에 별도 배부) 1부.
2.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후보지 신청)반대 동의서 1부.
3.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후보지 신청)동의 철회서 1부.
4.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후보지 신청)반대 동의 철회서 1부. 끝.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일원동 663번지 일대 제 1 호
번호부여일자	2025. 10. 31.
확인(인)	/1,000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건축물	()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구역개요

위 치 (요청 구역)	일원동 663번지 일대	구역면적	73,443.2 (m ²)
----------------	--------------	------	----------------------------

3. 동의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확인하였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함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니다.

- 아래의 동의여부 표기 시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 ①과 ②는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의제사항		자필로 동의 기재 <①, ② 중 한 곳만 표기>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서명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i>동의</i>
② 조합직접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 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충족)될 경우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i>동의</i>

2.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

※ (예시) 입안 요청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사항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청장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구청장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자필로 동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강남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 협의·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거환경개선과등 市 소관부서)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계)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관련 신청구역의 범위(구역계)를 확인하였으며,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위임자 (동의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후보지 신청) 반대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일원동 663번지 일대 제 1 호
번호부여일자	2025. 10. 31.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2. 반대 동의내용 :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에 반대합니다.

년 월 일

반대 동의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 1. 신분증명서 사본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3.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 협의·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거환경개선과등 市 소관부서)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관련 ,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위임자 (동의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후보지 신청) 동의 철회서

1. 동의 철회자(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 (공유여부)	면적(m ²)
		(계필지)	(계)
		()	
		()	
	건축물	소재지 (허가유무)	동수
		()	
		()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2. 동의 철회 내용 :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 철회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 1. 신분증명서 사본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3.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 협의·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市 소관부서)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관련,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위임자 (동의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1. 반대동의 철회자(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황

관리 내역	토지	소재지 (공유여부)	면적(m ²)
		(계필지)	(계)
		()	
	건축물	()	
		소재지 (허가유무)	동수
		()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2. 반대동의 철회 내용 :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반대동의 철회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강남구청장 귀하

- 첨부 1. 신분증명서 사본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3.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 협의·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市 소관부서)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관련,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위임자 (동의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